#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45

발의연월일: 2024. 7. 31.

발 의 자: 권성동·강선영·김승수

김용태 • 서명옥 • 신동욱

인요한 · 서지영 · 이만희

임종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 로 규정하고 있고, 2025. 2. 28.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는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후에 사망한 사람을 호국 원 안장 대상자로 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소방 공무원의 경우 군인과 유사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재직자에 대하여 현충원 안장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국원 안장 대상자에 대하여도 재직 기간 및 퇴직 형태 등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임. 또한, 교정직공무원의 경우에도 경찰·소방 공무원과 유사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므로 이들 또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현충 원에,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호국원에 각각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퇴직 형태에 따른 안장자격 제한을 삭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 생한 자들에 걸맞는 책임과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 거목 신설 등). 법률 제 호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1항제4호라목 전단 중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을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으로 20년"으로, "사람(경찰·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의2 중 "제1항제4호라목"을 "제1항제1호거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타목 및 파목"을 "타목, 파목 및 거목"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교정공무원 묘역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 5조제1항제1호거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 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 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 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 1. ------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 가. ~ 하. (생 략) 가. ~ 하. (현행과 같음) <신 설> 거. 경찰·소방·교정직 공무 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 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4. 국립호국원 4.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경찰·</u>소방·교정직 공무 라.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 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원으로 20년-----

으로서 사망한 <u>사람(경찰</u>
·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
<u>직한 사람에 한정한다)</u>.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를 준용한다.

- 5. (생략)
- ② ~ ④ (생 략)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 1. ~ 4. (생략)
- 4의2. <u>제1항제4호라목</u>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 등으로 제10조에 따른 안장대 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 5. (생략)
- ⑥ · ⑦ (생 략)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 차 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

<u>사</u>
<u>람</u>
5. (현행과 같음)
( = 5
② ~ ④ (현행과 같음)
5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1항제1호거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5. (현행과 같음)
⑥ · ⑦ (현행과 같음)
세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
치 등) ①

부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5조제1항제1호차목, <u>타목</u> 및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 2. ~ 6. (생략)
- ② ~ ⑥ (생 략)
- 제13조(묘역의 구분) ① 국가보훈 부장관은 국립묘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1. ~ 5의2. (생 략)

<신 설>

- 6. ~ 8. (생략)
- ② (생 략)

1
<u>파목 및 거목</u>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묘역의 구분) ①
1. ~ 5의2. (현행과 같음)
5의3. 교정공무원 묘역
6.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